

공 고 문

문화재청 공고 제2024 - 187호

「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·관리 규정」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2.

문 화 재 청 장

「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·관리 규정」 일부 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사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·시행(2024.5.17.)에 따른 명칭 변경*, 분류체계 재정립** 등 기존 문화재 관리체계 대전환 내용 반영 필요

* 문화재 → 국가유산, 문화재청 → 국가유산청

** 유형문화재, 무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문화재 → 문화유산, 자연유산, 무형유산

- 기존 보존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동 사업을 적극적 공개·활용을 통해 국가 유산의 유·무형적 가치 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조정 필요
- 또한 규제요소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자구정리 등 필요

2. 주요내용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·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, 분류체계 재정립 반영(전문)
 - ‘문화재’ → ‘국가유산’, ‘문화재청’ → ‘국가유산청’
-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제외 사업 구체화(개정안 제5조)
- 국가유산보수정비 지원 사업 추가 및 기준 보조율 조정(별표 1)
 - (추가) 국가유산 관련 역사·사건·철학·사상·인물등 가치 발굴, 자료 제작
 - (추가) 안내·해설을 위한 안내판(표지판) 등 관련 장비 구축
 - (보조율 조정) 수장시설 건립,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비 70% → 50%
- 규제요소가 있는 조문 삭제
 - “보존처리 사업”의 설계·시공 분리원칙에서 제외(개정안 제7조2호)
 - “부당결부”에 해당되는 조문 삭제(현행 제11조제2호)
- 신청된 사업의 지원여부에 대한 등급 근거 마련(개정안 제10조제1호)
- 별지서식(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) 마련(개정안 제7조 제5호)

3. 의견제출

본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(기획재정담당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의견제출 양식

(기관 또는 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)

개정(안)	검토의견	
	수정(안)	사 유

- 의견 작성방법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기관, 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.

○ 담당자 연락처

- 담당자 : 조현수 사무관, 허창학 주무관
- 전 화 : (042) 481-4784, (042) 481-4793

○ 의견 제출방법

- F A X : 042-481-4799
- 이메일 : dylena@korea.kr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
기획재정담당관

- 붙임 1. 「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·관리 규정」 일부개정훈령
(안) 1부
2.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